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73 발의연월일: 2022. 9. 15.

발 의 자 : 윤준병ㆍ이정문ㆍ오영환

김수흥 • 김정호 • 김철민

양정숙 · 안규백 · 양경숙

이수진(비) · 고영인 · 민형배

김성환 · 김성주 · 위성곤

한병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합등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 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그런데, 2017년 현행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특례조항(제12조의 3)이 신설될 때 부칙에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동 특례조항의 일몰기한이 2022년 12월 29일에 도래하면, 그 이후에는 김치 등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등의 경영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인 농업인 개개인의 소득감소 및 지역 일자리감소 등의 피해로 귀속될 우려가 큼.

이에, 지역농협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합등을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며, 더불어현행법상 지역농협의 구역은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이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기능도 맡고 있으므로 이점도 함께 명시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및 제14조제1항).

법률 제 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구역은"을 "구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또는"으로 한다.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① 지역 제14조(구역과 지사무소) ① 농협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 구역은 세종특별자치 시,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나 의 시・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생활권 · 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 •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 적당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는 둘 이상의 시·군·구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의3의 개 < 삭 제 > 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 년간 효력을 가진다.